

## 부산항4단계배후도로중간만동시점고가도로시행계획변경건의안 심사보고서

1993. 02. 15

의회운영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2. 12. 24 이태홍의원외 12인
- 나. 회부일자 : '93. 02. 10 회부
- 다. 상정일자 : 남구의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93. 02. 15)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태홍의원)

#### 가. 제안이유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설치 공사에 따른 남구 문현동 제2도시고속도로와 연계사업인 문현동에서 갑만1동 새마을금고 앞까지 고가도로 건설사업 시행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신선대 부두와 연결된 콘테이너 전용 철도와 연계하여 주택외곽쪽 항만배후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전의코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사업개요

- 구 간 : 갑만동 89-2번지 - 문현동 795번지(3,375m)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콘테이너 배후 수송 고가 도로 공사
- 사업 시행처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 사업 기간 : '92. 07 - '94. 12. 31

추진경위

- 92. 07월 중순 고가도로 계획 지상 공람 공고
- 92. 09. 25 주민 대표 9명 부산시 방문, 공사 계획 변경 요구 및 요구  
미관철시 집단 행동 불사 표명
- 92. 09. 26 공사 반대 진정서 제출, 주민 2,032명 서명  
(부산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
- 92. 10. 15 시 실무대책 협의회 개최 및 고가도로 설치계획 변경 불가  
회시
- 92. 11. 04 주민 공사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28명)  
관련기관 방문 및 계획 변경 요구(시, 구, 민정당사, 항만청)
- 93. 01. 05 허재홍 국회의원, 시도시계획국장, 구청장 등 관계관 및  
주민대표등 회합,  
고가도로 설치 현장(6899부대)답사 및 시행처인 해운항만청  
건설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주민요구사항 관찰  
토록 노력 약속
- 93. 02. 10 시 도시계획국에서 설계 변경안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주민 요구 사항

- 감만1동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설치시, 소음, 분진, 매연 등 공해발생,  
주변 도로의 상가 기능 상실, 교통 체증 유발등으로 주거, 교육환경등  
생활 환경의 오염으로 주민 생활에 큰 피해와 불편이 예상되므로,
-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해안쪽으로 건설 계획 변경 요망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의견

-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이미 감만동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등 7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주민 의견과 같이 계획 변경시 인근에  
위치한 육군 6689부대를 관통하게 됨으로 군사기지 보호법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이 불가함으로 고가도로 설치 계획이 불가함.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식)

#### ○ 총괄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증 갑만동시점 고가도로 시행 계획은 부산항 콘테이너 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할 시 갑만동 지역의 구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매연 공해를 유발시켜 주거, 교육 환경의 오염으로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 검토 의견

- 주민 의견과 사업 시행처의 제반 사유를 분석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처에서는 예산과 군부대 관통등 어려움은 있으나 기존 주거지역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가도로 건설로 인하여 27,000여 인근 주민의 교육 주거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하여 기존 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사업시행처 및 시당국에서는 조속히 이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중앙관계부처(해운항만청, 건설부, 국방부)와의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관계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명의로 건의안을 채택, 시당국 및 사업시행처, 관계부처등에 통 고가도로 시행 계획의 변경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한성 위원	이태홍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나 주민의 어떤 건의나 진정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된 사례가 있는지</li> <li>· 관계 전문가에게 설계상의 하자나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1.5 허재홍 국회의원, 성재영 시의원, 신종관 남구청장, 시도시계획국장, 항만청 사업소장 등과 주민 대표가 회의를 가졌으며 현장 답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부산시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예산 사정과 군부대 협조사항이 곤란하지만은 일단 설계 변경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음.</li> <li>· 93.2.10 시에서 준비한 설계 변경안을 성재영 시의원과 주민 대표가 검토하여 수렴하였으며 건의안대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li> </ul>
최진동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군부대의 이전 계획은 없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 계획은 없다고 들었음.</li> </ul>
손원익 위원	이기왕 위원장 이태홍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1.5 관계기관과 주민간의 대책 회의 내용을 건의서에 삽입해야 참석한 관계관들의 책임이나 사후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있으나 예산과 군부대의 협조 관계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건설부, 국방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임.</li> <li>· 변경안대로하면 공사비 추가 부담이 440억 정도되는데 그것은 부산시 예산 가지고는 어렵도 없고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등 중앙 정부에 건의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임.</li> </ul>

5. 심사 결과 : 조해수 위원의 찬성 토론후 원안 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서 문안중 자구 수정건

- 이기광 위원장이 건의서 본문중 “환경 공해와 교통 체증 가중등”을 “환경 공해 가중과 교통 체증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음.